

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 제안 이유

도 분청 및 관계기관(농협)의 직제개편에 따라 직제명칭과 위원회의 위원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

□ 주요 골자

- 농촌소득개발유공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중 "농어촌개발국장"을 "농정국장"으로, "농림수산국장"은 삭제하고 "농협 도지회장"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"으로"충북원에협동조합장"을"충북사과원에농업협동조합장"으로 명칭 변경 (안 제 5조 1항 2호)
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"농어촌개발과장"을 간사로 한다면 "농업정책과장"으로 명칭 변경 (안 제 5조 1항 4호)

□ 개정 근거

- 충청북도직제규칙중 개정규칙 2021 호 (1994. 5. 16)
-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 개정 (1995. 2. 1)

□ 기타 참고자료

- 별첨

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제1항 제2호중 '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' 을 '농정국장' 으로 '농협도지회장' 을 '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' 으로 '충북원에협동조합장' 을 '충북사과원에농업협동조합장' 으로 하며 제4호중 '농어촌개발과장' 을 '농업정책과장' 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 (구성) ①생략</p> <p>1. 생략</p> <p>2. -----<u>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</u> ----- <u>농협도지회장,</u> ----- <u>충북원에협동조합장</u> -----</p> <p>3. 생략</p> <p>4. 위원회의 ----- <u>농어촌개발과장</u>-----,</p> <p>② 생략</p>	<p>제5조 (구성) ①현행과 같음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-----<u>농정국장,</u> ----- <u>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,</u>----- <u>충북사과원에농업협동조합장</u> -----</p> <p>3. 현행과 같음</p> <p>4. ----- <u>농업정책과장</u>-----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

참 고 자 료

지방 자치법 (부분발췌)

제 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 16조 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